

## 그건 이렇습니다

###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신청 안내

지난 6월 30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제 9 조의 2항(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등)이 신설되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은 기존 납품가격이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납품단가의 인상이 필요할 때 수급사업자(납품업자)가 원사업자(발주자)에게 납품가격 인상을 요청하였으나, 갑을관계에서 협상이 원활치 못한 점과 납품가격의 인상을 요청하여도 협상에 응하지 않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납품업자) 대신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원사업자(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원사업자(발주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신청한 납품단가 조정신청일 기준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계을리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등을 받게 되었다. 또한 조정신청일로부터 10일 경과후에도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및 조정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란?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의거 설치된 협의회로서 하도급거래의 당사자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분쟁을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조정하는 기구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조정요청 받은 대상을 상대로 양 당사자에게 자료제출 및 출석을 요청하고 필요시 현장방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분쟁조정(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정) 사실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항을 토대로 조정안을 제시하여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합의서 및 조정서 작성 후 조정회의를 거쳐 조정 성립 의결을 하며, 조정을 불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정불성립으로 사건 서류 일체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첩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착수하여 조정을 하게 된다.

## 1. 하도급법의 목적과 주요 내용

### 가. 하도급법의 목적

-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주로 대기업)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주로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 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규제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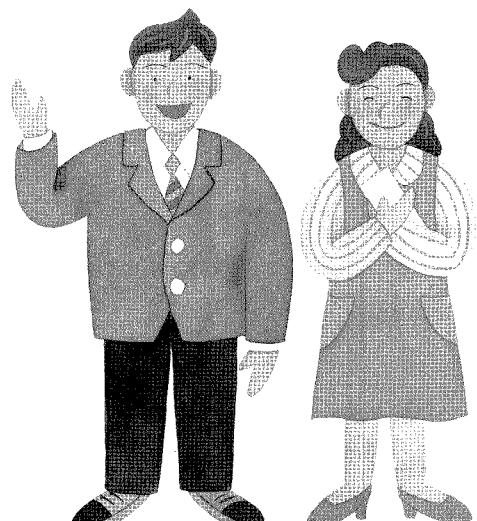
- 경제규모가 커지고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기업은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평적·수직적 분업 활동을 도모
- 대기업은 공정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외주하고 부품을 납품받아 완성품을 생산하게 되는데, 대기업에 비해 경제적 약자인 중소납품업체는 계약체결, 단가결정 등에 자기 의견을 충분히 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따라서 양자간 거래 과정에서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시정하고,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

#### 다. 조합의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제 9 조의 2(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 조정신청 등)에 의거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은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가능
  - ①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하도급 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음
  - ②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합도 신청가능

#### 라. 신청조건

- ① 기간 기준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경과  
(계약기간 90일 이내는 포함)
- ② 가격변동 기준
  -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이 계약일 기준 15% 이상 상승
  - 계약일 기준 원재료 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나머지 하도급금액의 3% 이상인 경우



#### 마. 신청방법 :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후 원사업자에게 관련서류 제출

## 그건 이렇습니다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1) 조정신청일부터 10일 경과 후에도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 2) 조정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 바. 분쟁조정 절차

#### 하도급법 분쟁조정 절차도

